

# 변경대비표

## [신탁계약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Allset 글로벌 매크로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
2. 효력발생일 : 2016 년 11 월 9 일
3. 정정사유
  - 환매수수료 삭제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등

###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p>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Class A, Ae, C1, C2, C3, C4, Ce, Ci, Cw, S: <u>환매수수료 있음</u></p> <p>Class Cw 가입자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p>	<p>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Class A, Ae, C1, C2, C3, C4, Ce, Ci, Cw, S: <u>환매수수료 없음</u></p> <p>Class Cw 가입자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u>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u></p>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2.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2.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u>취득시</u>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u>취득시</u>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p>

<p>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p>	<p>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1)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u>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u>(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및 <u>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u>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p> <p>(2)~(4) (생략)</p> <p>(5) <u>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u></p> <p>(6) (생략)</p> <p>&lt;신설&gt;</p> <p>11. <u>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지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p> <p>13.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u>법시행령제80조제10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p> <p>③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u>신탁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1)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u>기업어음증권</u> 및 <u>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u>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p> <p>(2)~(4) (현행과 동일)</p> <p>(5) <u>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u></p> <p>(6) (현행과 동일)</p> <p>(7) <u>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u></p> <p>11. <u>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지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p> <p>13.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u>법시행령제80조제1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p> <p>③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u>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p>	<p>&lt;신설&gt;</p>	<p>⑦ <u>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하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u></p>

제24조의 2(수익증권의 판매기준)	<p>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p> <p>1.~8. (생략)</p> <p>9. Class Cw 가입자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p> <p>10.~11. (생략)</p>	<p>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p> <p>1.~8. (현행과 동일)</p> <p>9. Class Cw 가입자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u>계좌를 보유한 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u></p> <p>10.~11. (현행과 동일)</p>
제25조의2(수익증권의 전환)	<p>⑤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p> <p>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p> <p>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삭제>
제33조(이익분배)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u>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u></p> <p>② (생략)</p> <p>&lt;신 설&gt;</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lt;단서 삭제&gt;</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p> <p>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p> <p>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p>
제41조(환매수수료)	<p>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Class A, Ae, S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p> <p>2. Class C1, C2, C3, C4, Ce, Ci, Cw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3. Class C-P1(연금저축): 해당사항 없음</p> <p>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삭제>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작성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부칙	-	(변경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변경대비표

## [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 NH-Amundi Allset 글로벌 매크로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
2. 효력발생일 : 2016년 11월 9일
3. 정정사유
  - 환매수수료 삭제
  -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 → 4등급)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등

##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요약자료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환매수수료 Class A,Ae,S: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Class C1,Ce,Ci,Cw: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삭제>
요약자료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요약자료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신설>	1. 과세 - 2016년 11월 9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연도에 과세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5.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Class Cw 가입자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Class Cw 가입자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u>계좌를 보유한 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u>

<p>제2부. 8.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p>	<p>가. 투자대상</p> <p>②채권 :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p> <p>④어음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p>	<p>가. 투자대상</p> <p>②채권 :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p> <p>④어음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p>
<p>제2부. 8.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p>	<p>&lt;신설&gt;</p>	<p>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1)투자대상의 ②채권 및 ④어음"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2부. 8.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p>	<p>2. 동일종목 투자제한</p> <p>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1)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u>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및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u>]</p> <p>(2)~(4) (생략)</p> <p>(5) <u>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u></p> <p>(6) (생략)</p> <p>&lt;신설&gt;</p> <p>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p>	<p>2. 동일종목 투자제한</p> <p>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1)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u>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u>]</p> <p>(2)~(4) (현행과 동일)</p> <p>(5) <u>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u></p> <p>(6) (현행과 동일)</p> <p>(7) <u>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u></p> <p>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p>

	<p>라. <u>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지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p> <p>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제80조제10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7. 금전의 차입</p> <p>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신탁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지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제80조제1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7. 금전의 차입</p> <p>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 자산 비중과 운용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6등급 중 <u>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을 지니고</u>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u>7.86%</u>로 6등급 중 <u>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을 지니고</u> 있습니다.</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3) 환매수수료</p> <p>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 등의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ass A,Ae,S: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li> <li>- Class C1,Ce,Ci,Cw: 90일미만 이익금의 70%</li> </ul>	<p>(3) 환매수수료</p> <p>해당사항 없음</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ass A,Ae,S: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li> <li>- Class C1,C2,C3,C4Ce,Ci,Cw: 90일미만 이익금의 70%</li> </ul>	<p>해당사항 없음</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결산일 기준으로 갱신</p>
<p>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p>	<p>가. 이익 배분</p> <p>(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u>다</u></p>	<p>가. 이익 배분</p> <p>(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u>다</u></p>

	<p>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p>	<p>만, 집합투자업자는 법제 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p> <p>&lt;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gt;</p> <p>2016년 11월 9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1~3. (생략) 4.(1)~(2) (생략) &lt;신설&gt; (이하 생략)</p>	<p>(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1~3. (현행과 동일) 4.(1)~(2) (현행과 동일) (2)-1.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u>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u></p>	<p>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u>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u></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p>	<p>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p>



	<p>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생략)</p> <p>(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생략)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u>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u> - (생략)</p>	<p>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u>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u>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현행과 동일)</p> <p>(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생략)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u>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u> - (생략)</p>
제5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신설>	해당사항 없습니다.

# 변경대비표

## [간이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 NH-Amundi Allset 글로벌 매크로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
2. 효력발생일 : 2016 년 11 월 9 일
3. 정정사유
  - 환매수수료 삭제
  - 투자위험등급 변경(3 등급 → 4 등급)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등

##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표지	투자위험등급: 3등급	투자위험등급: 4등급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환매수수료 Class A,Ae,S: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Class C1,Ce,Ci,Cw: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삭제>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신설>	1. 과세 - 2016년 11월 9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연도에 과세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